

「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, 2019년 3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총칙(안 제1조 ~ 제4조)

- 목적, 위치 및 시설, 업무, 관리자 등

나. 관리 및 운영,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3조)

- 휴장일, 운영시간, 이용신청, 행위 및 이용제한, 이용료, 이용료의 반환, 설비 설치의 사전승인, 관리 및 운영 등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2조에서는 체험장 위치 및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
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임자 및 관리자, 그 업무 등에 대하여
정하였습니다.
안 제5조에 및 안 제6조에서는 휴장일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,
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신청, 행위 및 이용제한, 이용료
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
-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

【관계 법령】

□ 문화예술진흥법

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